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강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이씨케미칼(주)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번지, 제이씨케미칼(주) 신항공장 회의실 (3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제1호 보고 : 제20기(2025.1.1~2025.12.31) 영업보고 및 감사위원회 보고

제2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20기(2025.1.1~2025.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배당 주당 : 50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관련 정관 신설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윤희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의진 신규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지용 신규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제21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 30억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제5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5-1호 의안 :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5-2호 의안 :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 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 본·지점 및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반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3월16일 오전9시부터 2026년3월25일 오후5시까지

※ 상시기간 중 24시간(휴무일 포함) 의결권 행사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소집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제이씨케미칼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 윤 희 (직인생략)

공동대표이사 김 의 윤 (직인생략)

[첨부1] 제2-1호 의안 :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1조(이사의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p>
<p>제33조(이사의 임기와 보선) ①(생략) ②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략)</p>	<p>제33조(이사의 임기와 보선) ①(생략) ②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독립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략)</p>	<p>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p>
<p>제36조 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6배(사외이사의 경우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생략)</p>	<p>제36조 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6배(독립이사의 경우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생략)</p>	<p>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p>
<p>제4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한다. ③~④(생략) ⑤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제4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한다. ③~④(생략) ⑤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p>	<p>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p>
<p>부칙 <신설></p>	<p>부칙 (2026. 03. 26)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상법 시행시기 ('26.7.23자) 고려한 경과규정</p>

[첨부2] 제2-2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관련 정관 신설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설>	제10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1)

주1) 실제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윤희 재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의진 신규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지용 신규선임의 건

구분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약력(현직포함)	추천인	최근3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사내이사	이윤희	1965.06.05	3년	재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1 ~ 현재 : 제이씨케미칼 대표이사 ● 2021.01 ~ 2022.12 : 삼미상사 대표이사 ● 1992.01 ~ 2020.12 : SK에너지 본부장 	이사회	-	-	부	부	무
	김의진	1981.06.10	3년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1 ~ 현재 : 제이씨케미칼 부회장 ● 2017.05 ~ 현재 : 서울석유(주) 대표이사 	이사회	-	대표이사	부	부	무
	김지용	1968.11.27	3년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1 ~ 현재 : 제이씨케미칼 사장 ● 2021.02 ~ 2025.07 : PT.NIAGAMAS GEMILANG 대표이사 ● 2020.01 ~ 2020.12 : 삼미상사 대표이사 ● 1993.01 ~ 2019.12 : SK에너지 실장 	이사회	-	-	부	부	무

[첨부4] 제5-1호 의안 :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1)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당사는 2027년까지 시설투자, 해외 팜플랜테이션 투자 등을 위해 소요자금 190억원 필요
- 기보유 중인 자기주식 663,883주(약22억원/주당3,337원)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후 처분하여 투자자금에 우선 충당하고자 합니다.

[자기 주식 요약]

구 분	자기주식 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처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취득(장내취득) 주1)	보통주683,883주	663,883 주

주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주식

(2)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또는 처분 세부 계획

1)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대상 주식 수	기준가 주1)	조달 규모	처분 시기
663,883주	3,340원	22억원	경영상 목적을 최대한 달성 가능한 시점에 처분, 단 상법 시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1) 2026년2월 평균 종가(3,337원)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 처분 시점에 따라 기준가 변동 가능합니다.

2) 자금 활용 계획

- 자금은 시설 투자, 해외사업 투자등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 예정

구 분	투자 내용	투자 규모 주1)
투자 항목	공장시설 및 해외투자 등	190억원

주1) 해당 투자계획의 항목, 시기, 금액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취득방법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처분
투자 항목	장내 취득	663,883주

나.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보유/처분 목적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보유 개시 시점 기준		처분 예정 시점 기준	
			보유개시 시점	주식 수	처분예정 시점	주식 수(주)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처분	장내취득	보통주	'26.3.26 (주1)	663,883주	'26년 상법 시행일자 기준 1년 6개월 내 결정 주2)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 계획				663,883주	-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보통주		21,583,931주		21,583,931주 주3)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0.3%		0%

주1) 시행일 이전 기보유분, 보유/처분계획 승인받은 주주총회일을 보유 개시 시점으로 함

주2)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처분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22,267,814주)에서 전체 자기주식(683,883주) 제외 기준, 추후 자본금 또는 자기주식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예정된 보유 기간

보유/처분 목적	주식 수	보유 기간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유	663,883주	경영상 목적을 최대한 달성 가능한 시점까지 보유, 단 상법 시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결정

주1)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보유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예정된 처분시기

보유/처분 목적	주식 수	처분 예정 시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	663,883주	경영상 목적을 최대한 달성 가능한 시점에 처분, 단 상법 시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결정

주1)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처분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5] 제5-2호 의안 :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1)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제도 수립/운영 등을 위한 자기주식보유 필요

[자기 주식 요약]

(단위 : 주)

구 분	전체 자기주식	임직원 보상 목적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취득(장내취득) 주1)	보통주 683,883주	20,000 주

주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주식

(2) 임직원 보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세부 계획

1)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대상 주식 수	기준가 주1)	조달 규모	처분 시기
20,000주	3,340원	67백만원	‘임직원 보상 실행 시점까지 보유.처분, 단 상법 시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1) 2026년2월 평균 종가(3,337원)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 처분 시점에 따라 기준가 변동 가능합니다.

2) 자금 활용 계획

구분	수량(주)	비고
임직원 보상	20,000주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

가.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취득방법	임직원 보상 목적을 위한 처분
보통주	장내 취득	20,000주

나.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보유/처분 목적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보유 개시 시점 기준		처분 예정 시점 기준	
			보유 개시 시점	주식 수	처분 예정 시점	주식 수(주)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임직원 보상 목적	장내취득	보통주	'26.3.26 (주1)	20,000주	'26년 상법 시행일 자 기준 1년 6개월 내 결정 주2)	
임직원 보상 목적을 위한 처분 계획				20,000주	-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보통주		21,583,931주		21,583,931주 주3)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0.1%		0%

주1) 시행일 이전 기보유분, 보유/처분계획 승인받은 주주총회일을 보유 개시 시점으로 함

주2)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처분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22,267,814주)에서 전체 자기주식(683,883주) 제외 기준, 추후 자본금 또는 자기주식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예정된 보유 기간

보유/처분 목적	주식 수	보유 기간
임직원 보상 실행 시점까지 보유	20,000주	임직원 보상 실행 시점까지 보유, 단 상법 시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1)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보유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예정된 처분시기

보유/처분 목적	주식 수	처분 예정 시기
임직원 보상 실행 시점에 처분	20,000주	임직원 보상 실행 시점에 처분, 단 상법 시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1)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이나 업무 추진 경과에 따라 실제 처분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